지방채발행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. 10. 5

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2. 10. 13

다. 상정일자 : 제1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92. 10. 15)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)

○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동사신축비 일부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

○ 지방채 발행 규모 712,000천원으로 그 내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12,000천원 하단2동, 신평2동사 신축비 각각 100,000천원이며

○ 발행조건은 연리 3~6% 2년 또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별 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

가. 질의

○ 김성엽 위원

－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이자 등을 고려하여 발행 하는지?

○ 장창조 위원

－기채액에 대한 상환계획은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는지?

나. 답변

○ 총 기채액 37억4,200만원으로 이자부담이 많이 있으나 행정수요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

현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연도별 재원조달 가능 범위내에서 발행계획을 수립

○ 상환계획 역시 연도별로 내무부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문제없슴.

5. 토론요지

○ 조용근 위원

－시급한 사업을 위해 투자재원의 부족한 부분은 기채하여 필요성이 있다는 찬성토론

6. 심사결과 : 원안대로 의결(재석위원 13명 전원찬성)